

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(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)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폐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9. 17.

경 인 지 방 우 정 청 장

우체국 폐국 관한 정정 고시

1. 폐국

총괄국	대상국	관서급	주소	우 편 국기호	금 용 국기호	일부인면		폐 국 예정일
						한글	영문	
파주	통일동산 우체국	6급	파주시 탄현면 법흥로13	45992	107359	통일 동산	TONGILDONGSAN	2026.10.6. (업무종료일: 2026.10.2.)

2. 업무대체국

총괄국	대상국	관서급	주소 (구 주소)	일부인면		신 설 예정일
				한글	영문	
파주	파주통일동산 우편취급국	취급국	파주시 탄현면 약산로61	파주통일동산	PJ.TONGILDONGSAN	2026.10.6.

3. 정정사유 : 업무대체국의 국명 오작성

4. 존속기한 : 이 고시는 우체국 폐국 익일까지 유효